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규정 준용**

- 조특법 §100조의15①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 용 어

구분	내 용
동업기업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동업자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분가액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 납세의무자 [지법 § 103조의53] **조특법 규정 준용**

- 동업자
 - 조특법 §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동업기업 전환법인[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조특법 §100조의16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짐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계 법령	[지령 §100조의30]
신고납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준 청산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의6서식]
납세지	준청산일 현재의 안분율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2%)

□ 동업기업의 배분 [지법 §103조의54] **조특법 규정 준용**

- 아래 금액은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단, 아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함

배분 기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
세액공제·감면	지특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금액
특별징수세액	지법 §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및 지법 §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조특령 §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지법 §103조의55] **조특법 규정 준용**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조특법 §100조의21①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지법 §103조의56] **조특법 규정 준용**

- 조특법 §100조의24①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가산세** [지법 § 103조의57, 지령 § 100조의32③]

○ [지법§100조의30]에 따른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세무서 제출기한
①	무기장	▶ MAX (산출세액*20%, 수입금액*7/100,000)	
③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 미수취·허위수취 금액 * 0.2%	
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0.02%	지급일 다음연도 2월말 (법법§120)
⑥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0.1% ▶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가액 * 0.2%	계산서합계표: 2.10 (법법 §121)
⑧	신용카드거래 거부	▶ 건별 MAX (거부·불분명 금액 * 0.5%, 500원)	
⑨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0.1% ▶ 건별 MAX (거부·불분명 금액*0.5%, 500원)	가입: 해당업종 3월내 (법법 §117의2)

○ [조특법§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구분	법인세 가산세액(㉠)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명세 신고불이행	▶ 무신고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 소득금액 2%	▶ ㉠ * 10% ▶ ㉠ * 10%
동업기업 특별징수불이행	▶ MAX(①, ②) ①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5% ② 무(과소)납부한 세액*일수*3/10,000	▶ ㉠ * 10%

◀Check▶

- ▶ 동업기업에 대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징수되어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내 전액 납부하여야 함

□ **국세 준용** [지법 § 103조의58]

○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 §100조의14부터 §100조의26]까지 규정을 준용함